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
----------	-----

2023. 3. 24.(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동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옥외행사의 재난예방조치와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22. 10. 29.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는 주최측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적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됨.
- 현행 법률 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과<sup>4)</sup>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sup>5)</sup> 명

4)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5)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시되어 있으며, 「공연법」 제11조와<sup>6)</su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sup>7)</sup>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② ~ ③ <생 략>
-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6)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제정안은 주최자가 불명확하고 관계 법령 기준으로 1,000명 미만의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제정안은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 및 법적 기준 미만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옥외행사’, ‘주최’, ‘주관’, ‘안전관리요원’,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이 조례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부서의 장 재량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옥외행사 주관부서의 장이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와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옥외행사의 인명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해 소방서 및 도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옥외행사 중단 권고와 안전관리요원 준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3. 8. ~ '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이 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이 신설될 경우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지난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제도적 정비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법령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내에서 개최되는 주최자가 불명확하고 관계 법령 기준으로 1,000명 미만의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군,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및 응급의료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는 500명 미만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충청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규모와 다중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축제”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축제를 말한다.
3.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을 말한다.
5.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란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참여하는 옥외행사를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 등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신고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에 필요한 안전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및 후원, 순간 최대 인원 등)

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구간 등에서 인파밀집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6.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7. 비상시 조치계획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경찰, 소방, 의료,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옥외행사 개최 1일 전 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과 옥외행사장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련부서의 장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부서)과 함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와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방서 또는 도내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이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